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4.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1월 15일, 김한규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6년 1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6. 3. 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6. 3. 2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26. 3. 2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한규의원)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진흥지구

의 지정에 대해 규정함.

그런데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투자 이행으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고 장기간이 지나도 도지사에게 대한 보고의무 등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자진흥지구에서 투자를 전부 이행하여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고, 지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도지사가 직접 또는 투자자의 요청을 받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63조의2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개정안은 투자진흥지구에서 투자계획상의 투자가 전부 이행되고 지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도지사가 투자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합계획심의회를 거쳐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3조의2 신설 등).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는 투자금액 미화 2천만 달러 이상 등 법정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조세·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제도임.

투자금액·업종·입지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가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하면, 도지사가 지정계획 수립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 이후에는 반기별 투자실적 보고 및 점검·조사를 통하여 사업 이행 상황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그 지정을 종료할 수 있는 명시적인 ‘해지’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투자계획을 모두 이행한 이후에도 법령상 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구조임.

이로 인하여 투자계획을 모두 이행한 투자자에 대해서도 조례에서 정한 반기별 투자실적 및 고용현황 보고 등 관리·점검 의무가 계속 적용될 수 있어,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일정 시점 이후에는 기업 활동에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투자계획상의 투자가 전부 이행되어 지정 목적이 달성된 투자진흥지구에 대하여, 지정 후 10년이 경과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제재적 성격의 ‘지정 해제’와는 구별되는 ‘지정 해지’ 절차를 도입하여, 지구 지정을 장래에 향하여 종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투자자의 보고·실적관리 등 사후 의무를 합리적으로 종결하고 지정 목적이 달성된 투자진흥지구에 대하여 불이익 없는 종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기관과 투자자 모두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고 투자진흥지구 제도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제163조의2의 위임 구조와 관련하여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임.

현행법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제163조제1항에서 지정 ‘해제’ 사유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해제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 제163조의2 본문에서는 ‘투자 전부 이행’ 및 ‘10년 경과’라는 지정 ‘해지’의 핵심 요건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지정 해지에 필요한 추가적인 기준과 절차·관리 전반을 대통령령에 광범위하게 위임할 경우 현행법상 지정 해제 규정과의 위임 구조 및 법령 체계의 통일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법 제163조와 유사하게 지정 해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에 위임함으로써 지정 해제 규정과 위임 구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